

평창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0년 9월 30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9. 14, 이경진의원 2인
- 나. 회부일자 : 2000. 9. 29.
- 다. 상정일자
 - 제7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조례특위(2000.9.29)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경진 의원)

가. 제 안 이 유

- 1999. 12.3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 국내·외 여비 조정이 있었으나 2000.1.8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재조정하여 의원여비를 현실화하기 위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일비·숙박비를 공무원 인상비율에 따라 인상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통령령 제16,691호 (2000.1.8)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비율에 맞게

의원여비를 재조정하려는 것임.

○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
조례안 10부